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250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이길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21. 1. 2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508883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1. 'C은 원고에게 11,694,217원 및 그 중 10,221,167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D이 2020. 11. 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 E, F, G, H(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7), I(망인의 자녀 J의 남편으로서 상속지분 3/49), K, L(위 J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 각 2/49)은 2021.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2. 3.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C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21. 1. 28.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1/7)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의 유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등 피고의 기여분을 감안하면 C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재산분할결과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기여분 산정이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1/7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별지